

자연재해현황

구 분		내 용
승인번호		156003
승인일자		1998년 10월 13일
통계종류		보고통계
보고대상	지역	■ 전국
	범위	■ 전국
	보고단위	■ 우리나라 지역에 한해 동안 발생한 자연재해
	보고대상 규모	■ 우리나라 지역에 1월 1일~12월 31일 기간동안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비
보고항목		■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, 재산피해, 복구비 등
자료보고방법 및 작성방법		■ 행정집계
보고기간	기준시점	■ 매년 12월 31일 기준
	보고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2월~6월
	보고주기	■ 1년
공표	공표시기	■ 작성기준년도 익년 12월
	공표주기	■ 1년
	공표방법	■ 간행물(재해연보), 국민재난안전포털(www.safekorea.go.kr)
보고체계		■ 시군구→시도→기상청→행정안전부
자료이용시 유의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통계수치는 하위단위에서 반올림한 값으로 전체 수치와 하위 분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■ 통계표 중 과거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숫자 등은 당해 연보에서 정정한 것임
주요 용어해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, 강풍, 풍랑, 해일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, 조류대발생, 조수, 화산활동, 소행성, 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(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) ■ 자연재해: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(자연재해대책법 제2조) ■ 이재민: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 ■ 특별재난지역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 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당하다고 중앙대책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선포
주요 연혁		■ (1998년) 자연재해현황 통계 작성 승인(통계청)